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원칙〉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22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원칙(안 제11조의2 신설)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1. 14.

다. 회 부 일 : 2026. 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의 이행 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계약기간을 일 단위로 산정하면서 공휴일을 포함하고, 관계 기관 협의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계약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업무 가능 일수가 과도하게 짧아질 우려가 있음. 이는 용역 계약 등에 있어서 품질 저하와 무리한 일정 운영을 초래하고, 지체상금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계약의 이행기간과 관련하여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계약 체결 시 충분한 이행기간 산정 원칙

(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소요기간, 관계 법령상 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 이행기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¹⁾.

다만 이행기간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국가계약이 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는 것으로서²⁾, 이행기간 역시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임.

1)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2)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의 주된 계약상대자인 중소기업³⁾은 국가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계약상대자 입장에서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 관련 협의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전에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이행기간 내에 공사 또는 용역·물품 납품이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은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⁴⁾, 이행기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한 부실공사 등으로 계약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계약 체결 시에 그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협의 소요기간, 관련 절차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도록 이행기간 산정의 원칙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계약의 특성과 절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목적물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가계약법」은 예정가격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기 위한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예정가격 산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⁵⁾.

3)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 공공조달 중 63.1%를 차지하고 있음

(조달청, “‘24년 공공조달 규모 225.1조원… 전년대비 7.9% 증가”, 2025.6.27.)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8조의2(예정가격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

다만, 개정안은 이행기간 산정 원칙의 적용 대상을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행기간을 일 단위로 정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행기간 산정 시 공휴일의 수, 협의 소요기간 및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용 대상을 전체 계약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정경제부는 공공계약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나, 시행령에서 개별 사업의 특수성 등을 모두 감안하여 이행기간 산정 기준을 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건설기술 진흥법」⁶⁾등 입법례를 감안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적정한 이행기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개정안이 이행기간 산정 시 객관적인 요소를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계약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 이행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출함.

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1조의2(계약의 이행기간)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이행기간을 일(日) 단위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이행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의처

02)6788-5160